

[별표 4] <개정 2009.4.20>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0조제4항관련)

허 가 기 준	적용범위	세 부 기 준
1.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공 통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임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3.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공 통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공 통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 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또는 침사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산림의 수원함	공 통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

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 윗하거리 10킬로미터 밖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 위치하여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3)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
6.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전용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재해복구시설이 아닌 시설	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의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35도) 이하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평균경사도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헥타르당 임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임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숙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숙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임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임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

		우에는 입목축적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7.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공 통	가.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시행이 가능할 것 나.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할 것 1)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 2)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다.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이 설치될 것 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마.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규모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장장·납골시설·공설묘지·법인묘지·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자. 사업계획부지안에 원형으로 존치되거나 조성되는 산림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계획이 수립될 것 차.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고 있는 사업계획지의 계획상의 도로(준공검사 또는 사용개시 전의 도로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것이 아닐 것. 다만,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시설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할 것 타. 「사방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시설물로 인하여 인근의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파.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안의 산지가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해안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가.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당해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것 나. 삭제 <2008.7.24> 다.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수림(樹林)을 조성할 것 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당해 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마. 전용하려는 산지를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채 광	가.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굴진채광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채광을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잔여산지에서 계속 채광함으로써 잔여산지가 평탄지로 되는 경우 (3)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채광은 광산보안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공 장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른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 내에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장 설립이 가능한 지역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도 로	가. 산지전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안림 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에는 터널 또는 교량으로 도로를 시설할 것. 다만, 지형여건상 우회 노선을 선정하기 어렵거나 터널·교량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로서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切取高)가 당해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안에 인접한 산지에 도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시설로 인하여 해안의 유실 또는 해안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할 것

비고

1. 삭제 <2009.4.20>
2.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당해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호 적용범위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 세부기준란의 가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수 있다.

4. 산지전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